

의안번호	제11호				
의 결	2019. 3. 29.				
년 월 일	(제279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최	한	철
제출년월일			2019. 3		

기획홍보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범 납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발급수수료를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의 경우〈별표의 1 각종 증명 확인 발급 사항〉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6조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9. 3. 7. ~ 3. 27.) 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 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②(생	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1 ~ 2	
<u><신 설></u>		(현행과 같음)③ [서울특지원에 관한납세자의 경(1) 지방세	별시 모 조례」 우 별표 세목별	에 따른 제1호 : 과세 ²	모범 가목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의 100)분의 50	<u>을 경</u>
		<u> 감한다.</u>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u> 생략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8조(납기) 개정 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세무1과장 최 기 확

〈 관 계 법 령 〉

법규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2018.12.31.〉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1.7.28, 2015.10.8., 2017.3.23., 2018.12.31.〉

- 1.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 2.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3.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법규명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법규명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별표] <개정 2016. 12. 3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 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참 고 자 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

1. 각종 증명 확인 발급 사항

종	목	단	위	금 액	刊	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	12	건	800원			
(2) 건축물 관리 대장 무한	"		350원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1	τĤ	350원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1주	·택	800원			

과장 【세무1과】			담당팀장 【세외수입팀】				담당자					
성명	최기환	연락처	450-7370	성명	이진문	연락처	450-7421	성명	전수연	연락처	450-7422	